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 학사지침

2016. 2. 15.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초청외국인 학부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건전한 면학과 유학 생활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1(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학기관(장) : 장학생이 수학하는 대학(총장), 또는 한국어연수기관(장)
2. 수학대학(장) : 장학생이 수학하는 대학(총장)

제2조(한국어연수과정) ①장학생은 학위과정 입학 전에 1년의 한국어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능력 시험 (이하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TOPIK 5급 이상을 취득한 장학생은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을 충족하지 못한 장학생 중 TOPIK 3급 합격점의 70%(84점) 이상을 받고 한국어연수기관장의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 승인을 얻어 한국어 연수과정 이수 기간을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장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 장학금 지급 세부 지침에 따른 어학 연수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④장학생이 한국어 연수과정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한국어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사진단서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학위과정 수학) ①장학생은 교육원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학위과정에 입학 지원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학생은 수학대학이 정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장학생은 수학대학의 학칙에 따라 성실히 수강하여야 한다.

④장학생은 교육원장으로부터 최종입학대학을 승인받은 이후 수학대학을 변경할 수 없다.

⑤수학기관장은 매학기 종료 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생의 수학 상황을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한국어연수과정 장학생 : 성적 및 수료상황
2. 학위과정 장학생 : 성적 및 학위취득, 수료 상황

⑥장학생은 최종 수학완료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학종료보고서 1부
2. 지도교수의견서 1부

제4조(연락처 변경 신고) 장학생은 연락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락처 변경신고서를 갖추어 수학기관을 경유하여 교육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휴학 신청) ①장학생은 질병, 가정 사정, 본국의 긴급소환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려면 다음 증빙서류를 갖추어 수학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진단서 사본 1부(질병휴학의 경우에 한함)
2. 휴학신청서 1부

3. 지도교수의견서 각 1부

단, 한국어연수 중인 장학생은 휴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학대학장은 장학생의 휴학 처리 결과를 즉시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본국의 긴급소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수학대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복학 신고) ①복학을 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수학기관의 학칙에 따라 복학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수학기관장은 장학생의 복학 처리 결과를 즉시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일시출국 신청) ①한국어연수기간 중의 일시출국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생은 일시출국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시 출국 10일 전까지 한국어연수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출국할 수 있다.

1. 학기 중이라도 개인질병치료, 부모사망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2주 이내

2. 방학기간 중에는 소속 한국어연수기관의 방학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4주 이내

②학위과정 중에 일시 출국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일시출국신청서를 갖추어 일시출국 10일전까지 수학대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시출국 기간은 방학을 포함하여 학기당 60일,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재입국 신고) 일시출국기간이 종료되어 재입국한 장학생은 재입국 후 3일 이내에 여권사본 1부를 갖추어 수학기관장에게 재입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귀국 신고) ①장학기간이 종료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포기하고 귀국하려는 장학생은 소속 수학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학기관장은 장학기간 종료 또는 귀국 30일전까지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학생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국 내에 체류하려면 장학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까지 귀국 신고를 연기할 수 있다.

제10조(장학기간) ①장학생의 장학기간은 제2조에 의한 한국어연수 이수기간과 학부과정 4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장학기간에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경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해당 장학생에게 경고 처분한다.

1. 한국어연수기간 중 무단결석일이 연속하여 3일 이상 또는 월 누계 5일을 초과할 경우

2. 1년 한국어연수 후 TOPIK 3급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3. 학기 단위로 학부과정의 평균평점(백분위 환산점수)이 70점/100점 미만인 경우

4. 무단으로 일시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입국하지 않는 경우

제12조(장학생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

1. 지원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

2. 교육원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교육원이 정한 학사행정 조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수학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

5.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한 경우

6. 제2조 한국어 연수과정 이수 후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단, 한국어 연수과정 1년 후 TOPIK 3급 합격 최소 점의 70%(84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으로 수학대학에서 진학을 허용한 사람, 제2조의 ② 한국어 연수과정 이수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사람 또는 제2조의 ② 한국어 추가연수자로 추가 연수 후에 TOPIK 3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7. 무단 수학 중단으로 수강신청 학점의 2/3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8.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등으로 출신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한 경우

9.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 제11조의 1, 3, 4호에 의거, 경고 3회 이상을 받은 경우

11. 중도 포기한 경우

제13조(장학금 지급 및 수령) ①장학금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장학생은 장학금 지급 및 수령과 관련하여 교육원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장학생이 제2조의 한국어 연수기간 중에 일시 출국하면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④장학생이 제3조의 학위과정 중 학기당 30일을 초과하여 일시 출국하면 30일 초과분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⑤제5조의 휴학 기간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수학기관장이 장학생의 부득이한 국내 체류로 생활비 지급이 불가피함을 신청하여 교육원장이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⑥제12조에 따라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중도 포기 등의 경우에는 귀국 지원을 할 수 있다.

⑦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귀국 항공권과 귀국 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수학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학위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⑧장학생이 한국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수학을 포기하면 기존에 받은 장학금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본국의 긴급한 소환 등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준용규정) 본 지침에 규정된 이외의 학사에 관한 사항은 장학생의 수학기관의 학칙을 준용한다.

제15조(현지지도) ①교육원장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학기관의 장학생 관리 실태를 점검, 현지지도 할 수 있으며 수학기관은 관리 서류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수학기관장은 장학생이 건전한 면학과 내실있는 유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해야 한다.

1. 장학생은 전공과목 수학에 정진하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

2. 전공과 연관된 연구·학술관련 시간제 취업은 허용 할 수 있다.

3. 제11조(경고)에 해당하는 장학생은 시간제 취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16조(장학생 관리실적 평가) 교육원장은 수학기관에 대하여 장학생 관리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장학생 위탁인원 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6. 3.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16년도 초청 장학생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